

산업안전 Q&A

Q

철골제조·조립 및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 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30일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체가 시공하려고 하는 공사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업종 또는 규모인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크레인의 종류에 따른 방호장치의 설치 적용범위 및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크레인의 구조, 형태 및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대표적인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과부하방지장치 : 모든 크레인에 적용되며 정격하중의 1.1배 이상이 되면 크레인의 작동이 정지되는 것(단, 타워크레인은 1.05배)
 - ② 권과방지장치 : 모든 크레인에 적용
 - ③ 충돌방지장치 : 한 레인에 2대 이상 주행시 설치
 - ④ 주행크레인경보장치 : 펜던트 스위치를 조작하여 주행하는 크레인을 제외한 모든 주행크레인에 적용
 - ⑤ 후크해지장치 : 달기구를 후크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 ⑥ 경사각지시장치 : 지브가 기울어지는 크레인에 적용
 - ⑦ 모우먼트리미터 : 모든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적용
 - ⑧ 미끄럼방지고정장치 : 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에 적용
 - ⑨ 레인정지기구 : 횡행레일의 양끝단 및 주행레일의 양끝단에 설치
 - ⑩ 주행리미트스위치 : 주행하는 크레인에 적용
 - ⑪ 비상정지스위치 : 모든 크레인에 적용
 - ⑫ 정전보상장치 : 마그네틱크레인에 적용
 - ⑬ 회전부방호덮개 : 모든 크레인에 적용하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회전부에 적용
 - ⑭ 안전밸브 : 유압, 수압 또는 공기압 작동 크레인에 적용
- ※ 다만, 크레인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상기의 방호장치 중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추가적인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일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를 집행할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956호)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기술지도(분기 1회)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기준에 대한 구분(전담·정기)이 없어집니다.



공동계약방식에 의해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 계약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3조에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각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분담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고 공동경비는 각출하되 손익에 대하여는 공동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각 수행자의 분담내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이면 안전관리비를 각각 산출·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각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각출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수급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다만, 각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체인 경우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나, 공동수급인 중 일부 사업체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체인 경우 그 사업주는 해당 지분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계상하여야 하나, 각 수행자간 분담내역은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지분율에 의한 배분 등 수행자간 내부협의를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